

###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 입금 처리에 대한 문의

**Q**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 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니다. 입금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기타 수익 또는 비용(인건비)으로 혹은 다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국가 등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금액을 지출할때는 지출항목에 맞게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 정부지원 사업 관련 부가세 공제 문의

**Q** 당사는 정부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은 공급가액은 정부지원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부가세만 당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한 사업에서는 공급가액, 부가세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맞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잡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Q** 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을 낸 B법인이 소액부징수로 인한 세금 10원 미만 절사한 합계가 1,500원일 경우 B법인이 세금환급 신청시, 환급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원천세신고법인: A, A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했을 경우 / 환급신청법인:B)  
※ A법인은 이자소득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 A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B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B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